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512호
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사고기록장치(EDR)의 기록 항목·요건 확대, 캠핑용 자동차 제작 시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장착, 3.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부 안전관 기준 강화, 전조등 자동 점·소등 의무화, 자동명령 조향기능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, 제동등 점등기준, 중·대형자동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 감속량 기준, 등화장치 광도 오차기준 등을 완화하고, 도로교통법,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가.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정의 개정(안 제2조)

나. 초소형특수자동차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준 개정(안 제2조, 제6조, 제26조, 제90조)

- 다. 자동제어제동 작동에 따른 의무 점등 감속도 범위를 완화하고, 전기회생 제동장치 작동에 따른 제동등 점등 요건 완화(안 제15조, 별표 5의2)
- 라. 캠핑용 자동차 제작 시 차실 내에 가스누설경보기 의무 설치기준 신설(안 제18조의4 신설)
- 마. 모든 자동차에 보조제동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(안 제43조)
- 바. 자동차 소화설비 기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인용(안 제57조)
- 사.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조건에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를 추가하고, 기록 항목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확대(안 제56조의2, 별표 5의25)
- 아. 기준 적용의 특례 항목 추가, 인용조문 수정 현실화, 실효성을 상실한 특례 규정 삭제(안 제114조)
- 자. 속도계 표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개정(별표 5의12)
- 차. 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 간 거리기준 완화하고, 전조등, 제동등, 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 허용기준을 완화하며,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관측각도 내 관측광도를 자동차규칙에도 규정함으로써 명확화(안 별표 5의17, 별표 5의18, 별표 5의21, 별표 5의22)
- 카. 원격제어운전, 위험완화기능 등 자동명령 조향기능의 성능기준을 국제 기준과 조화하여 규정(안 별표 6의2)
- 타. 야간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조등의 자동 점·소등을 의무화하고 주간주행등 점등 시 후미등의 의무 점등기준 신설 및 양산자동차 등화 기준 완화(안 별표 6의4, 별표 6의8)
- 파. 주간주행등 점등시 후미등 연동조건에 따른 차폭등 및 후미등의 표시장치 예외 규정 개정 및 양산자동차 등화기준 완화(안 별표 6의11, 별표 6의14)
- 하. 국제기준에 추가 등재된 발광소자광원에 대한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을 추가(안 별표 6의21)
- 거. 양산자동차 등화장치의 허용 편차 요건을 모두  $\pm 20\%$ 를 허용하는 등 등화기준 완화(안 별표 5의36, 별표 6의3, 별표 6의5, 별표 6의6, 별표 6의7, 별표 6의9, 별표 6의10, 별표 6의12, 별표 6의13, 별표 6의15, 별

표 6의16, 별표 6의17, 별표 6의18, 별표 6의27, 별표 6의28, 별표 6의31, 별표 6의32, 별표 30의8, 별표 32의2)

- 너. 승합자동차 및 3.5톤 초과 화물·특수자동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작동하기 전 경고단계에서 속도 감속량 제한기준을 삭제(안 별표 7의8)
- 더. 차량총중량 3.5톤 이상 화물·특수자동차에 장착하는 후부안전판의 중복기준을 삭제하고,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 강화(안 제19조, 별표 13)
- 러.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좌석안전띠 성능기준 명확화(안 별표 16)
- 머. 자동차의 전자파 적합성 국제기준 완화에 따라 전자파 방사기준, 자동차 부품의 전자파 내성 기준 완화(안 별표 24)
- 버. 이륜자동차의 조종장치 조문명 수정, 고전원전기장치 관련 어휘 명확화 등 조문 수정(안 제65조, 별표 5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자동차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
(우편번호 30103)

- 전자우편 : [herdong1928@korea.kr](mailto:herdong1928@korea.kr)

- 팩스 : 044-201-5584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(전화 044-201-3850, 3853, 팩스 044-201-5584)로 문의하여 주시거나,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[www.molit.go.kr](http://www.molit.go.kr)>정책자료>법령정보>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